

울산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160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찬

변론 종결 2021. 3. 9.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2. 25. 접수제12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2018. 4. 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4. 9.부터 2020. 4. 8.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2018. 4. 11. D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4. 8.경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3)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801,068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B은 2005. 2. 15.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20. 2. 25. 협의이혼 하였는데, 채무초과에 있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2.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2. 25. 접수 제12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4. 접수 제91205호로 채권최고액 230,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와 혼인하기 전 단독으로 마련한 자금과 대출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B는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으로 피고에게 가족 부양을 부담시켜 오다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급부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B와 피고 사이에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와 혼인하기 전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 70,000,000원을 신혼집 마련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05. 2. 15. B와 혼인하여 2020. 2. 25. 협의이혼에 이를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와 B 사이의 자녀들이 2006년생, 2010년생으로 아직 어리고 아직 양육기간이 오래 남아있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75,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5,6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차액은 약 130,000,000원 정도인 점, ⑤ B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군산시 F 답 2645㎡ 중 377/2645(공시지가 14,996,500원상당), 경북 청도군 G 답 800평(시가 47,602,8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⑥ 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H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사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 주소]

경남 양산시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M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N호 84.9409㎡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경남 양산시 I 대 66105.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6105.9분의 47.0174

--- 이 상 ---